'텍스트'로서의 헌법*

– 북한 역대 헌법전의 언어구조 비교분석

신 우 철**

I. 들어가는 말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란 적어도 그 순수한 형식의 면에서는 '언어'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과학의 여러 분석방법들은 오랫동안 헌법학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1] 이하에서는 역대 북한 헌법전의 언어구조에 대하여 '계량언어학'[2]의 방법론을 동원한 비교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른바 '어휘계량'의 방법을 통한 텍스트분석에 관해서는 갖가지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가령, ① 통계적 방법은 텍스트의 민감한 뉘앙스를 포착하기에는 너무 거칠고, ② 데이터에 대한 허위의 정확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으며, ③ 의미의 확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맥(context)'의 영향을 배제하고 있으며, ④ 양(quantity)에 관한 논의로써 질(quality)에 관한 주장을 대체한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뻔한 결과를 반복 서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3]

---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헌법학

1) 이 분야에서 '기초' 수준의 연구로는 신우철, "운명으로서의 국가 – 국가론의 디지털적 재구성," 「법과사회」 제20호(2001. 6), 33-65쪽과 신우철, "'텍스트'로서의 헌법 – 헌법전의 계량언어학적 비교분석," 「법과사회」 제22호(2002. 6), 109-136쪽 참조. 이외에 헌법학자의 저작은 아니지만 현행 헌법전의 '어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수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 서울: 현암사, 1999도 참조.

2) '계량언어학(quantitative linguistics)'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이상억, 「계량국어학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39-154쪽("계량언어학: 어휘부의 음운·형태·의미론적 구조") 참조.

하지만 북한 헌법전의 언어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통계적·비교적 방법의 유용성이 입증되리라 믿는다. 우선, 그간 남북교류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그다지 많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텍스트의 의미를 구속하는 사회적 맥락(context)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부족하다면, 텍스트 자체의 구조와 형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편이 차라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지하다시피 북한 헌법전은 1948년 이후 1972년·1992년·1998년 세 차례의 중요한 변화(전면개정)를 경험한다. 이는 각 헌법전의 언어구조 변화를 시간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될 뿐 아니라, 유사한 시기(1948년·1972년·1987년)에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겪은 우리 헌법전과의 공간적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되리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1948년헌법·1972년헌법·1992년헌법·1998년헌법과 우리 1948년헌법·1972년헌법·1987년헌법을 대상으로 삼아, 각 텍스트들의 언어구조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 헌법전의 부칙 부분은 계량의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였으며, 모든 헌법전은 제목, 조·항·호, 표제, 부호 등을 빠짐없이 제거하여 '순수한 문장들'의 연결형태로 변환하여 계량하였다. 한편, 필자의 지난 논문에서와는 달리, 헌법전 중 독립된 문장형식을 갖추지 못한 '호' 단위 조문까지 전체 음절수와 전체 단어수의 계산에 포함시켰다(전체 문장수 계산에는 불포함).[4] 이외에 몇몇 계량상 착오들까지 수정한 결과, 지난 논문에서 계량된 통계수치와 다소 차이 – 결정적 의미는 없는 – 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한편, 북한에서는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5] 계량의 단위 설정에서는 이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지난 논문의 기준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아래 인용문 참조).[6]

〈분절원칙〉 ① 조사·어미·접미사는 계량의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② '-적(的)' '-상

3) 박갑수(편저), 「국어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 1994, 61쪽(김광해 집필부분) 참조. 그밖에 유명한 N. Chomsky도 통계적 계량작업을 폄하하는 태도를 취했다.

4) 신우철(주 1: 2002), 115쪽. 단, 1문장 당 음절수의 계산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된 문장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문들을 문장수와 음절수에서 모두 배제하였다.

5)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언어정책」,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2, 95쪽. 더 상세한 내용은 서정곤, "남·북한 띄어쓰기 규정의 비교," 북한언어연구회(편), 「북한의 어학혁명」, 서울: 백의, 1989, 71-84쪽 참조. 북한에서 붙여쓰기가 강화된 것은 '독서능률'을 중시한 김일성의 교시에서 비롯되는데, 최근 들어 이전에 비하여 띄어쓰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와 비교할 때는 붙여쓰는 경우가 많다. 조오현·김용경·박동근, 「남북한 언어의 이해」, 서울: 역락, 2002, 113-122쪽(특히 115쪽, 121쪽) 참조.

6) 신우철(주 1: 2002), 115-116쪽.

(上)' '-화(化)' '-성(性)' '-간(間)' '-시(時)' 등도 독립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량의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북한 헌법전의 '-데'도 계량단위에서 제외) ③ 보조용언은 '균형있는' '위력있는' '로동능력있는'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맞춤법의 규정을 따랐다. ④ 숫자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년 · 일 · 인 · 명' 등 불완전명사는 앞의 숫자에 포함시켜 하나의 단위로 계량하였다. ⑤ 복합명사는 분절하지 아니한 전체를 각각 하나의 단위로 계량하였다. 복합명사가 자주 등장하는 법조문 · 법률문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⑥ '하다' '있다' '없다' 등은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량하지 아니하였다. ⑦ 괄호로 묶인 단어는 괄호 안의 내용까지 포함시켜 그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계량하였다.

II. 헌법전의 구조분석

1. 텍스트의 편제

1948년 9월 8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① 근본원칙(10) ② 공민기본권리/의무(21) ③ 최고주권기관(20)(최고인민회의〔15〕;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5〕) ④ 국가집행기관(16)(내각〔11〕; 성〔5〕) ⑤ 지방주권기관(14) ⑥ 재판소/검찰소(13) ⑦ 국가예산(5) ⑧ 민족보위(1) ⑨ 국장/국기/수부(3) ⑩ 헌법수정절차(1) 등 10장 10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괄호 안은 조문 수). Maarseveen과 Tang의 편제분류 가운데서는, '사회구조' 내지 '국가구조'에 관한 근본원칙을 헌법전의 전면에 배치한, 소련의 1936년헌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7] 그러나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국가기구보다 앞에 배치하고 있는 점에서, 소련의 1936년헌법은 물론 그 이후에 제정된 중국의 1954년헌법보다도 오히려 진일보한 편제로 평가될 수 있다.[8]

(1) 한국에서 '영도적 대통령제'의 '유신헌법'을 채택한 데 대응하여, 1972년 12월 27일 북한에서도 '주석' 중심의 이른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1948년헌법의 전면개정에 해당하는 이 1972년헌법은 ① 정치(17) ② 경제(17) ③ 문화(14) ④ 공민

7) Maarseveen, Henc van, Ger van der Tang, *Written Constitutions: A Computerized Comparative Study*, Dobbs Ferry: Oceana Publications, 1978, 87-88쪽 참조.

8) 중국의 경우 1982년헌법에 이르러 비로소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국가기구보다 앞에 배치하게 된다. 韓大元, 「新中國憲法發展史」, 石家庄: 河北人民出版社, 2000, 210-211쪽 참조.

기본권리/의무(24) ⑤ 최고인민회의(16)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11) ⑦ 중앙인민위원회(7) ⑧ 정무원(8) ⑨ 지방인민회의/인민위원회/행정위원회(18) ⑩ 검찰소/재판소(14) ⑪ 국장/국기/수도(3) 등 11장 14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괄호 안은 조문 수).

(2) 그로부터 만 20년이 지난 1992년 4월 9일, 구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이라는 상황 조건 속에서 또 한차례 전면적 헌법개정이 단행되었다. 이 1992년헌법은 ① 정치(18) ② 경제(20) ③ 문화(19) ④ 국방(4) ⑤ 공민기본권리/의무(25) ⑥ 국가기구(81)(최고인민회의〔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6〕; 국방위원회〔6〕; 중앙인민위원회〔7〕; 정무원〔9〕; 지방인민회의/인민위원회〔14〕; 지방행정경제위원회〔5〕; 검찰소/재판소〔16〕) ⑦ 국장/국기/국가/수도(4) 등 7장 17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괄호 안은 조문 수).

(3) 김일성 사후에 제정된 현행 1998년헌법(1998. 9. 5)은 '서문'이 신설된 이외에, 주석·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권력구조에 소규모의 개편이 있었을 뿐, 본질적인 구조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1998년헌법은 서문 이외에 ① 정치(18) ② 경제(20) ③ 문화(19) ④ 국방(4) ⑤ 공민기본권리/의무(25) ⑥ 국가기구(76)(최고인민회의〔13〕; 국방위원회〔6〕;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11〕; 내각〔14〕; 지방인민회의〔8〕; 지방인민위원회〔8〕; 검찰소/재판소〔16〕) ⑦ 국장/국기/국가/수도(4) 등 7장 16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괄호 안은 조문 수).

단순히 편제상의 조문 숫자만을 비교할 때, 북한의 역대 헌법전은 1948년헌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한 구조를 보여준다. 1948년헌법은 이후의 헌법전들에 비하여 ① 공민의 기본권리·의무에 속하는 조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20.2% > 14.6~16.1%)과 ② 근본원칙(정치·경제·문화·국방)에 속하는 조항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9.6% < 32.2~36.7%)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북한의 헌법은 1972년의 헌법개정을 계기로 하여, 공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조항이나 국가기구의 구체적 조직에 관한 조항이 대폭 축소되고, 정치·경제·문화·국방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조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역대 헌법전과도 확연히 구별되는데, 우리의 경우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히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원칙을 규정한 총강이 차지하는 비중도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세한 수치 비교는 아래 〈도표1〉과 〈도표2〉를 참조하기 바란다.

〈도표1〉 역대 북한 헌법전의 편제 비교

	근본원칙				공민 권리 의무	국가 기구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 회	주 석	국방 위원 회	중앙 인민 위	내각/ 정무 원	지방기구 (지방인민 회의 등)	검찰소 재판소	국장 국기 수도	기 타	계
	정 치	경 제	문 화	국 방													
'48 헌법	10 9.6				21 20.2	63 60.6	15 14.4	5 4.8	0 0	0 0	0 0	16 15.4	14 13.5	13 12.5	3 2.9	7* 6.7	104 %
'72 헌법	17 11.4	17 11.4	14 9.4	0 0	24 16.1	74 49.7	16 10.7		11 7.4	0 0	7 4.7	8 5.4	18 12.1	14 9.4	3 2.0	0 0	149 %
'92 헌법	18 10.5	20 11.7	19 11.1	4 2.3	25 14.6	81 47.4	18 10.5		6 3.5	6 3.5	7 4.1	9 5.3	19 11.1	16 9.4	4 2.3	0 0	171 %
'98 헌법	18 10.8	20 12.0	19 11.4	4 2.4	25 15.1	76 45.8	13 7.8	11 6.6	0 0	6 3.6	0 0	14 8.4	16 9.6	16 9.6	4 2.4	0 0	166 %

* 국가예산(5)－민족보위(1)－헌법 수정의 절차(1)

〈도표2〉 역대 한국 헌법전의 편제 비교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	선거 관리	지방 자치	경제	재정	헌법 개정	기 타	계
'48 헌법	7 6.8	23 22.3	20 19.4	25(17) 24.3(16.5)	8 7.8			2 1.9	6 5.8	6 5.8	1 0.1	5** 4.9	103 %
'72 헌법	7 5.6	27 21.4	25 19.8	32(20) 25.4(15.9)	9 7.1	3 2.4	2 1.6	2 1.6	8 6.3		3 2.4	8* 6.3	126 %
'87 헌법	9 6.9	30 23.1	26 20.0	35(20) 26.9(15.4)	10 7.7	3 2.3	3 2.3	2 1.5	9 6.9		3 2.3		130 %

* 통일주체국민회의

** 부칙

2. 텍스트의 크기

단순한 조문 숫자의 비교만으로는 헌법전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음절수 · 단어수 · 문장수의 측정을 통하여 텍스트의 크기를 보다 정밀하게 계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대 헌법전의 텍스트 크기는 아래 〈도표3〉과 같이 나타났다. 대체로 헌법텍스트의 크기는 헌법이 제정된 시점과 반비례하고(즉, 오래된 헌법일수록 그 분량이 적고, 새로운 헌법일수록 그 분량이 많다),[9] 헌법이 개정된 횟수와 비례하는 것(즉, 분량이 많을수록 개헌이 잦고, 분량이 적을수록 개헌이 드물

9) Sartori, Giovann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2nd ed., Houndmills: Macmillan, 1997, 197쪽.

다)[10]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역대 헌법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948년헌법 이후 역대 헌법전은 그 텍스트의 분량(음절수)이 시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6754음절→10259음절→12477음절→13054음절). 흥미로운 사실은 1948년 이래 북한 헌법전의 텍스트 크기는 비슷한 시기 한국 헌법전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1948년헌법(6754음절)과 우리 1948년헌법(6399음절), 북한의 1972년헌법(10259음절)과 우리 1972년헌법(11068음절), 북한의 1992년헌법(12477음절)과 우리 1987년헌법(12133음절)을 비교해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아래 〈도표4〉 참조). 한편, 북한 헌법은 1948년부터 현재까지 약 55년 동안 8차례의 크고 작은 개헌을 경험하였는바, 이는 216년 동안 불과 16회의 개헌만을 경험한 미국헌법과 54년 동안 무려 50회에 육박하는 개헌을 경험한 독일기본법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11] 이러한 개헌의 빈도는 같은 기간 동안 9차례 개헌을 경험한 한국 헌법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그밖에 조문수의 비중변화에 관한 앞서의 분석결과(1972년헌법 이후 기본권·국가기구 조항의 비중 축소와 일반원칙 조항의 비중 확대)는 음절수·문장수의 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도표3〉 역대 북한 헌법전의 크기 비교

	서문	정치·경제·문화·국방	공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구	국장 등 기타	계
'48 헌법	0(0) 0(0)	876(13.0) 26(14.1)	1278(18.9) 43(23.2)	4110(60.9) 102(55.1)	490(7.3) 14(7.6)	6754 음절 185 문장 2062 단어
'72 헌법	0(0) 0(0)	3671(35.8) 83(26.6)	1503(14.7) 45(14.4)	4893(47.7) 180(57.7)	192(1.9) 4(1.3)	10259 음절 312 문장 2689 단어
'92 헌법	0(0) 0(0)	4633(37.1) 93(25.8)	1592(12.8) 49(13.6)	6031(48.3) 214(59.3)	221(1.8) 5(1.4)	12477 음절 361 문장 3272 단어
'98 헌법	1117(8.6) 15(4.2)	4686(35.9) 94(26.6)	1556(11.9) 48(13.6)	5474(41.9) 191(54.1)	221(1.7) 5(1.4)	13054 음절 353 문장 3421 단어

※ 괄호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표시한 것임. 이하 〈도표4〉도 같음.

※ 헌법전 중 독립된 문장형식을 갖추지 못한 '호' 단위 조문까지 전체 음절수와 전체 단어수의 계산에 포함시켰음(전체 문장수 계산에는 불포함). 이하 〈도표4〉도 같음.

10) Meinhard Hilf, Die sprachliche Struktur der Verfassung, in: HStR VII, §161 Rn. 31.

11) Hilf(주 10), Rn. 31 각주 51 참조.

〈도표4〉 역대 한국 헌법전의 크기 비교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 (선거관리, 지방자치, 재정 포함)	경제	헌법 개정	계
'48 헌법	288(4.5) 1(0.5)	251(3.9) 9(4.9)	1400(21.9) 45(24.5)	3921(61.3) 114(62.0)	416(6.5) 10(5.4)	123(1.9) 5(2.7)	6399 음절 184 문장 2048 단어
'72 헌법	279(2.5) 1(0.3)	402(3.6) 13(4.4)	2005(18.1) 63(21.3)	7511(67.9) 198(66.9)	491(4.4) 12(4.1)	380(3.4) 9(3.0)	11068 음절 296 문장 3452 단어
'87 헌법	330(2.7) 1(0.3)	553(4.6) 17(5.3)	3061(25.2) 89(27.8)	7136(58.8) 189(59.1)	799(6.6) 18(5.6)	254(2.1) 6(1.9)	12133 음절 320 문장 3870 단어

III. 헌법전의 문장분석

1. 문장의 길이

문장의 길이는 그 가독성(可讀性)(readability)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12] 지나치게 긴 문장은 법언어의 용이성과 일반대중성을 현격하게 감소시킨다. 한국어의 문장길이는 '1문장 당 음절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문기사가 62.3자, 논문이 50.8자, 소설이 31.2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0자 내외가 표준적인 문장길이로서 권고되고 있다.[13] 법조문의 경우 통계상 그 문장길이가 다른 장르에 비하여 긴 편으로 조사되고 있지만('1문장 당 어절수' 기준),[14] 적어도 우리 역대 헌법전은 한 문장이 33.4~36.6자로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Jackson, Bernard S., *Making Sense in Law: Linguistic, Psychological and Semiotic Perspectives*, Liverpool: Deborah Charles Publications, 1995, 125-126쪽: "문장의 길이는 가독성(可讀性)의 필요조건이다. 그 충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13) 박갑수, 「일반국어의 문체와 표현」, 서울: 집문당, 1998, 116-117쪽.

14) 강범모,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2002, 268쪽에 의하면, 조사대상 법조문의 1문장 당 어절수는 평균 14.38로서 전체 조사대상 36개 장르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 있다.

('1문장 당 음절수' 기준). 한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언어학에서 주장하는 명확성·단순성·평이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간결한 문체가 선호되고 있는바, 특히 언어를 혁명과 사상교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주체이론에 부합하기 위하여, 호소력이 강한 짧은 문장들이 즐겨 사용되고 있다.[15] 이에 따라 북한의 역대 헌법전도, 우리 역대 헌법전과 큰 차이 없이, 한 문장이 31.7~36.9자로서 상당히 간결한 문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북한의 역대 헌법전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으로는 ① 그 문장이 시기순으로 점차 길어지는 경향을 드러내는 점(31.7→32.9→34.6→36.9)(이는 우리 역대 헌법전도 마찬가지이다), ② 1948년헌법 이후의 역대 헌법전에서는 각 장별 문장길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 ③ 정치·경제·문화·국방에 관한 일반원칙조항(우리의 총강에 해당)의 문장길이가 특히 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상세한 수치 비교는 아래 〈도표5〉와 〈도표6〉을 참조하기 바란다.

〈도표5〉 역대 북한 헌법전의 문장길이(음절수/문장) 비교

	서문	정치·경제·문화·국방	공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구	국장 등	전체평균
'48 헌법	0	33.7	29.7	31.6	35.0	31.7
'72 헌법	0	44.2	33.4	27.2	48.0	32.9
'92 헌법	0	49.8	32.5	28.2	44.2	34.6
'98 헌법	74.5	49.9	32.4	28.8	44.2	36.9

※ 헌법전 중 독립된 문장형식을 갖추지 못한 '호' 단위 조문은 전체 음절수, 전체 문장수의 계산에서 모두 배제하였음. 이하 〈도표6〉도 같음.

15) 조오현·김용경·박동근(주 5), 215-217쪽. 그밖에 박용순, 「조선어 문체론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171-177쪽 참조. 특히 동 172-173쪽: "… 문체의 간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혁명적 문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구의 하나이다. … 로동계급은 언제나 짧게 쓴 글 다시 말하여 짧으면서도 내용있게 짠 글을 요구하는 것이며 필요없이, 허황하게 늘어난 글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다."

〈도표6〉 역대 한국 헌법전의 문장길이(음절수/문장) 비교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 (선거관리, 지방자치, 재정 포함)	경제	헌법 개정	전체평균
'48 헌법	288	27.9	31.1	32.2	41.6	24.6	33.4
'72 헌법	279	30.9	31.8	36.0	40.9	42.2	36.1
'87 헌법	330	32.5	34.4	35.5	44.4	42.3	36.6

2. 문장의 구조

문장의 길이가 문장의 가독성을 결정하는 유일의 요소는 아니다. 언어학의 연구결과로는 동일한 길이의 문장도 삽입절의 수와 위치에 따라 그 이해가능성에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16] 법조문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문장구조로서는 ① 핵심어의 위치, ② 부정구문 · 수동구문, ③ 명사구문, ③ 상호참조=준용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1987년헌법에는 ① 핵심어를 문장 끝에 배치한 부자연스러운 조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② 불필요한 수동구문과 복잡한 이중부정문을 남용한 문장도 적지 않으며, ③ 의미상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명사구문도 흔히 발견되고 있지만, ④ 상호참조=준용규정의 횟수는 많지 않고 그 이격(離隔)의 정도도 크지 않다.[17] 북한의 1998년헌법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우선, 서문의 장황한 문장들을 제외하고는, 핵심어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문장 끝에 배치된 조문은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되/된/될'의 어미를 사용한 수동구문이 우리 1987년헌법에는 총 89회 등장하는데 비하여, 북한 1998년헌법에는 그것이 총 33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는 이중부정문도 극히 드물다(제79조가 거의 유일함). 이외에, '-함/-음'의 명사형 어미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법조문의 일반적 특징이지만,[18] 북한의 1998년헌법에서는 명사형 어미를 이용한 문장의 축약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텍스트이해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상호참조=준용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헌법전은 법조문으로서의 형식성 · 전문성보다는 내용상의 용이성 · 일반대중성을 훨씬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6) Jackson(주 12), 126-127쪽.
17) 신우철(주 1: 2002), 123-127쪽 참조.
18) 강범모(주 14), 120쪽에 의하면, 조사대상 법조문의 명사화 '음' 어미는 평균 3.30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36개 장르 가운데 공동 8위를 차지하고 있다.

IV. 헌법전의 어휘분석

1. 어휘의 빈도

북한 역대 헌법전과 우리 역대 헌법전의 어휘들을 계량하여 통계처리한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선, ① 전체어휘의 수(=延語數), ② 개별어휘의 수(=異語數), ③ 평균빈도(①/②) 등은 각각 아래 〈도표7〉〈도표8〉과 같이 정리되었다. 어휘의 평균빈도로써 판단할 경우, 북한 헌법전은 하나의 (조사단위) 어휘가 평균 2.93~3.16회 반복 사용되었고, 우리 헌법전은 그것이 평균 2.92~3.91회 반복 사용되었다. 북한 헌법전의 경우 개헌에 따른 어휘 빈도의 변화폭이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좁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헌법전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북한헌법의 어휘사용(평균빈도 2.93)이 한국헌법의 그것(평균빈도 3.72)보다 훨씬 '분산적'임을 알 수 있다. 남북을 통틀어 가장 '집중적'인 어휘사용을 보여주는 헌법전은 한국의 1972년헌법(평균빈도 3.91)이다. 그밖에 '고빈도어휘'의 분포상황과 '저빈도어휘'의 분포상황은 아래 〈도표9〉〈도표10〉〈도표11〉〈도표12〉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 복합명사의 대부분과 불완전명사의 일부를 분절하지 아니한 조사임을 고려할 때, 실제의 '고빈도어휘' 분포상황은 보다 높은 빈도수로, 실제의 '저빈도어휘' 분포상황은 보다 낮은 빈도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도표7〉 역대 북한 헌법전의 전체어휘수·개별어휘수·평균빈도

	전체어휘수*(N)	개별어휘수**(V)	평균빈도***(P̂)
'48년헌법	2062	672	3.07
'72년헌법	2689	896	3.00
'92년헌법	3272	1037	3.16
'98년헌법	3421	1168	2.93

* 조사대상이 되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모든 조사단위 어휘의 수

** 중복되어 나타난 것을 헤아리지 않은 개별적인 어휘의 수

*** 조사단위 어휘의 평균 사용회수(P̂=N/V)

〈도표8〉 역대 한국 헌법전의 전체어휘수 · 개별어휘수 · 평균빈도

	전체어휘수(N)	개별어휘수(V)	평균빈도(P)
'48년헌법	2048	701	2.92
'72년헌법	3452	882	3.91
'87년헌법	3870	1040	3.72

아래 〈도표9〉〈도표10〉의 '고빈도어휘'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드러났다. 우선, 북한의 역대 헌법전은 1972년헌법 · 1992년헌법 · 1998년헌법이 빈도수 상위 10위 내 어휘들 가운데 6개 어휘(국가 · 최고인민회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하다 · 공민 · 선거)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1948년헌법은 이 가운데 3개의 어휘(최고인민회의 · 공민 · 하다)를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헌법전의 어휘구성에 있어, 1948년헌법과 그 이후의 헌법들 사이에는 '기본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나라 등과 같이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어휘들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1972년헌법 이후의 일이다. 반면, 우리의 역대 헌법전은 1948년헌법 · 1972년헌법 · 1987년헌법이 빈도수 10위 내 어휘들 중 8개 어휘(법률 · 하다 · 있다 · 정하다 · 대통령 · 의하다 · 또는 · 아니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건국 이후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 상응한 전면적 개헌에도 불구하고 헌법전의 어휘분포에 있어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역대 헌법전과 우리의 역대 헌법전을 비교할 때, 빈도수 10위 내 어휘들 가운데 단 1개의 어휘(하다)를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북한 헌법전과 우리 헌법전 사이에 어휘구성상의 유사성은 거의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만, 북한의 1948년헌법과 우리의 1948년헌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우리의 '국회'에 상응하는 것으로, 북한의 '공민'을 우리의 '국민'에 상응하는 것으로, 북한의 '법령'을 우리의 '법률'에 상응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해 줄 경우, 양자는 빈도수 10위 내 어휘들 가운데 무려 6개를 공유하는 셈이 된다. 요컨대, 북한 헌법전과 우리 헌법전의 어휘구성의 이질성은 1972년의 개헌 이후부터 비로소 본격화 ·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9〉 역대 북한 헌법전의 '고빈도어휘' 분포상황(빈도 100 순위)

'48년헌법		'72년헌법		'92년헌법		'98년헌법	
1.및	77	1.국가	72	1.국가	85	1.국가	88
2.있다	68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9	2.최고인민회의	81	2.최고인민회의	85
3.최고인민회의	60	3.최고인민회의	56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7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4
4.수	36	4.및	51	4.하다	43	4.하다	51
5.그	31	5.하다	38	5.결정	36	5.위하다	39
6.공민	29	6.공민	33	5.공민	36	6.공민	38
6.또는	29	7.사업	29	7.사업	35	7.상임위원회	33
8.내각	26	8.선거	28	7.정무원	35	7.선거	33
8.하다	26	9.정무원	26	9.또는	32	9.있다	31
10.법령	25	9.주석	26	9.선거	32	10.모든	29
11.가지다	24	11.가지다	25	11.위하다	30	11.가지다	28
12.국가	22	11.결정	25	12.모든	28	11.결정	28
12.인민위원회	22	13.권리	23	13.가지다	27	13.내각	27
1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2	13.모든	23	14.임기	26	13.또는	27
15.결정	21	13.해당	23	14.있다	26	15.권리	25
15.대하다	21	16.있다	22	14.지도	26	15.그	25
15.자기	21	17.중앙인민위원회	21	14.해당	26	15.사업	25
18.선거	17	18.대하다	20	18.같다	25	18.나라	22
18.헌법	17	18.위하다	20	18.권리	25	19.대하다	21
20.상임위원회	16	20.의하다	19	18.대하다	25	19.세우다	21
21.대의원	15	21.나라	17	21.나라	23	19.임기	21
21.의하다	15	21.대의원	17	22.중앙인민위원회	22	22.같다	20
21.지도	15	23.그	16	23.그	21	22.수	20
24.각급	14	23.사회주의	16	23.상설회의	21	22.인민	20
25.규정	13	23.인민과	16	25.자기	20	25.사회	19
25.이	13	23.지시	16	26.주석	19	25.해당	19
25.지시	13	27.인민회의	15	26.지시	19	27.대의원	18
28.경우	12	27.지도	15	28.세우다	18	27.자기	18
28.권리	12	29.로동	14	28.인민	18	29.법	17
28.보호	12	29.법	14	30.대의원	17	29.보호	17
28.일체	12	29.보호	14	30.법	17	29.위원장	17
32.인민	11	29.상설회의	14	30.보호	17	29.지도	17
33.공포	10	33.근로자	13	30.사회	17	33.구성하다	16
33.권한	10	33.보장하다	13	30.의하다	17	33.김일성동지	16
33.상	10	33.사회	13	30.인민회의	17	33.높다	16
33.수상	10	33.세우다	13	36.소환하다	16	36.로동	15
33.승인	10	33.인민위원회	13	37.로동	15	36.보장	15
33.실시	10	33.자기	13	37.보장하다	15	36.의하다	15
39.받다	9	39.같다	12	37.수	15	39.지시	14
39.상무위원회	9	39.다음	12	40.근로자	14	40.따르다	13
39.위하다	9	39.따르다	12	40.높다	14	40.사회주의	13
39.조직	9	42.구성하다	11	40.사회주의	14	40.소유	13
39.주권기관	9	42.없다	11	40.위원회	14	43.강화하다	12
39.채택	9	42.임기	11	40.인민위원회	14	43.국방위원회	12
45.경제	8	45.소환하다	10	45.구성하다	13	43.소환하다	12
45.법적	8	45.수	10	45.국방위원회	13	43.없다	12
45.보장하다	8	45.자유	10	45.다음	13	43.지방인민위원회	12
45.임무	8	45.채택	10	45.따르다	13	48.근로자	11
45.자유	8	45.책임	10	45.소유	13	48.발전	11
50.정령	8	50.앞	9	45.위원장	13	48.인민회의	11

'48년헌법		'72년헌법		'92년헌법		'98년헌법	
50.협동단체	8	50.임명	9	51.강화하다	12	48.휴회	11
52.각	7	50.지방인민회의	9	51.다르다	12	48.중	11
52.검사	7	53.농민	8	51.앞	12	53.것	10
52.관하다	7	53.높다	8	51.임명	12	53.다음	10
52.구성하다	7	53.받다	8	51.임무	12	53.부위원장	10
52.다음	7	53.소유	8	51.책임	12	53.위원	10
52.동등하다	7	53.임무	8	57.내다	11	53.임무	10
52.복종하다	7	53.전체	8	57.받다	11	53.자유	10
52.성	7	53.조국	8	57.발전	11	53.지방인민회의	10
52.수행하다	7	53.중앙재판소	8	57.없다	11	60.내다	9
52.시(市)	7	53.판사	8	57.위원	11	60.다르다	9
52.안	7	53.혁명	8	62.것	10	60.대책	9
52.없다	7	63.국가기관	7	62.중앙재판소	10	60.부문위원회	9
52.위원장	7	63.권한	7	62.지방인민회의	10	60.사람	9
52.재판소	7	63.기업소	7	62.집행	10	60.사회협동단체	9
52.중	7	63.내다	7	66.권한	9	60.상무회의	9
52.휴회	7	63.또는	7	66.부위원장	9	60.위대하다	9
68.군(郡)	6	63.로동자	7	66.사람	9	60.위원회	9
68.도(道)	6	63.법령	7	66.자유	9	60.임명	9
68.때	6	63.사회협동단체	7	70.대책	8	60.자주	9
68.소유	6	63.소집하다	7	70.때	8	60.전원회의	9
68.실행	6	63.승인	7	70.법령	8	60.중앙재판소	9
68.임기	6	63.실시	7	70.성원	8	60.투쟁	9
68.전	6	63.온갖	7	70.의장	8	74.권한	8
68.판사	6	63.완전하다	7	70.이상	8	74.그밖	8
68.행사	6	63.의장	7	70.자주	8	74.리익	8
77.국가예산	5	63.이상	7	70.중앙검찰소	8	74.문화	8
77.따로	5	63.인민참심원	7	70.중	8	74.받다	8
77.로력	5	63.재판	7	70.투쟁	8	74.성	8
77.문화	5	63.지키다	7	70.해임하다	8	74.승인	8
77.밑	5	63.투쟁	7	70.행정경제위원회	8	74.실현	8
77.발전	5	63.해임하다	7	70.휴회	8	74.온갖	8
77.부서	5	83.강화하다	6	83.기업소	7	74.이상	8
77.부수상	5	83.끊임없이	6	83.리익	7	74.전원	8
77.사업활동	5	83.다르다	6	83.문화	7	74.집행	8
77.선거권	5	83.등	6	83.소집하다	7	74.책임	8
77.소집하다	5	83.때	6	83.수행하다	7	74.헌법	8
77.수립	5	83.리익	6	83.승인	7	88.기업소	7
77.아니하다	5	83.문화	6	83.온갖	7	88.때	7
77.자녀	5	83.민주주의	6	83.재판	7	88.맞다	7
77.조선인민군	5	83.반대하다	6	83.전체	7	88.문제	7
77.최고재판소	5	83.발전	6	83.지방행정경제위원회	7	88.심의	7
77.토지	5	83.비롯하다	6	83.총리	7	88.앞	7
77.편성	5	83.사람	6	83.필요	7	88.인민경제발전계획	7
95.것	4	83.사회주의제도	6	83.혁명	7	88.인민위원회	7
95.결혼생활	4	83.성원	6	96.그밖	6	88.재판	7
95.과학	4	83.위원	6	96.맞다	6	88.전체	7
95.교육	4	83.위원장	6	96.명령	6	88.주체	7
95.기타	4	83.위원회	6	96.민주주의	6	88.중앙검찰소	7
95.되다	4	83.인민경제발전계획	6	96.보고	6	88.토의결정	7
.		.		.		.	
.		.		.		.	

〈도표10〉 역대 한국 헌법전의 '고빈도어휘' 분포상황(빈도 100 순위)

'48년헌법		'72년헌법		'87년헌법	
1.하다	58	1.법률	97	1.법률	117
2.법률	57	2.하다	96	2.하다	99
3.있다	51	3.대통령	83	3.있다	94
4.국회	47	4.있다	82	4.정하다	89
5.대통령	42	5.정하다	72	5.수	86
6.의하다	41	6.수	70	6.대통령	77
7.또는	40	7.의하다	60	7.의하다	69
8.정하다	36	8.아니다	57	8.또는	68
9.때	31	9.국회	55	9.아니다	63
10.국민	29	10.또는	52	10.국가	56
10.아니다	29	11.국민	51	11.국회	54
12.그	26	12.때	49	12.때	53
12.모든	26	13.관하다	40	13.관하다	52
14.수	25	14.국가	35	13.국민	52
15.관하다	23	15.그	32	15.그	44
16.받다	18	15.없다	32	16.모든	37
16.의결	18	17.모든	31	16.바	37
18.바	17	18.받다	28	18.받다	35
18.이상	17	19.의결	26	19.가지다	32
20.국가	15	19.통일주체국민회의	26	19.없다	32
20.권리	15	21.바	24	19.위하다	32
20.없다	15	21.이	24	22.필요	29
20.행하다	15	23.필요	23	23.기타	25
24.국무총리	14	24.가지다	22	23.이	25
25.가지다	13	25.국무총리	21	25.및	23
25.부통령	13	26.국회의원	20	26.권리	20
27.대하다	12	26.위하다	20	26.사항	20
27.3분지2	12	26.정부	20	28.대하다	19
27.자유	12	29.경우	19	28.자유	19
30.얻다	11	29.대하다	19	30.국무총리	18
31.선거하다	10	31.국무위원	18	30.얻다	18
31.조직	10	31.선거하다	18	30.이상	18
33.국무위원	9	31.임명	18	30.정부	18
33.국회의원	9	34.과반수	17	34.의결	17
33.기타	9	34.기타	17	35.경우	16
33.단	9	34.안	17	35.국무위원	16
33.법관	9	34.찬성	17	35.의무	16
38.공무원	8	38.법관	16	35.조직	16
38.대한민국	8	38.요구	16	39.국회의원	15
38.의무	8	38.위원	16	39.임명	15
38.재적의원	8	38.자유	16	41.법관	14
38.정부	8	42.사항	15	41.보호	14
38.출석	8	42.얻다	15	41.헌법	14
38.필요	8	42.이상	15	44.노력하다	13
38.헌법	8	42.자	15	44.보장하다	13
46.결정권	7	42.헌법	15	44.지다	13
46.권한	7	47.임기	13	44.헌법재판소	13
46.내	7	47.제2항	13	48.과반수	12
46.승인	7	47.조직	13	48.두다	12
46.위하다	7	47.중	13	48.찬성	12

'48년헌법		'72년헌법		'87년헌법	
46.의원	7	47.헌법위원회	13	51.안	11
46.제출	7	52.공무원	12	51.요구	11
46.중요	7	52.권리	12	51.임기	11
46.직무	7	52.범위	12	51.자	11
46.찬성	7	52.법원	12	51.중	11
46.행정각부	7	56.다만	11	51.한하다	11
57.것	6	56.의무	11	57.공무원	10
57.경제	6	56.정당	11	57.대한민국	10
57.공포	6	56.확정하다	11	57.재판관	10
57.구금	6	60.되다	10	57.정당	10
57.법률안	6	60.제1항	10	61.경제	9
57.보장하다	6	60.제출	10	61.공포	9
57.사회	6	60.헌법개정안	10	61.다만	9
57.예산	6	64.경제	9	61.동의	9
57.이	6	64.국회재적의원	9	61.되다	9
57.임명	6	64.권한	9	61.범위	9
57.제한	6	64.기간	9	61.법률안	9
57.중	6	64.긴급조치	9	61.법원	9
57.집회	6	64.법률안	9	61.심판	9
57.특별하다	6	64.조약	9	61.정치	9
57.한하다	6	64.지다	9	61.집회	9
72.되다	5	64.한하다	9	61.체포	9
72.범위	5	73.결정	8	73.구성하다	8
72.법원	5	73.공포	8	73.구속	8
72.보호	5	73.구성하다	8	73.국회재적의원	8
72.심사	5	73.대한민국	8	73.권한	8
72.의장	5	73.및	8	73.대법원장	8
72.이내	4	73.보장하다	8	73.명령	8
72.인하다	5	73.붙이다	8	73.선거하다	8
72.임기	5	73.인정하다	8	73.인정하다	8
72.재정	5	73.정치	8	73.재판	8
72.조약	5	73.제한	8	73.제1항	8
72.지다	5	73.집회	8	73.제출	8
72.지체없이	5	73.해산	8	73.조약	8
72.책임	5	73.행정각부	8	73.출석	8
72.체포	5	86.국민투표	7	73.행정각부	8
72.특허	5	86.대법원	7	73.효력	8
88.각인	4	86.대법원장	7	88.대법원	7
88.결의	4	86.대의원	7	88.따르다	7
88.경우	4	86.두다	7	88.수립	7
88.국무회의	4	86.보호	7	88.이유	7
88.규정	4	86.임시회	7	88.재정하다	7
88.기본	4	86.재판	7	88.지방자치단체	7
88.명령	4	86.출석	7	88.직무	7
88.못하다	4	95.구금	6	88.직무범위	7
88.수행하다	4	95.국무회의	6	88.처분	7
88.5인	4	95.동의	6	97.국무회의	6
88.요구	4	95.심의	6	97.규칙	6
88.우리	4	95.예산	6	97.근로	6
88.의견	4	95.이내	6	97.누구든지	6
.		.		.	
.		.		.	

〈도표11〉 역대 북한 헌법전의 '저빈도어휘' 분포상황

	빈도 1회인 어휘수(%)	빈도 2회인 어휘수(%)	빈도 3회인 어휘수(%)
'48년헌법	395(58.8)	103(15.3)	51(7.6)
'72년헌법	519(57.9)	140(15.6)	75(8.4)
'92년헌법	607(58.5)	153(14.8)	80(7.7)
'98년헌법	704(60.3)	176(15.1)	78(6.7)

〈도표12〉 역대 한국 헌법전의 '저빈도어휘' 분포상황

	빈도 1회인 어휘수(%)	빈도 2회인 어휘수(%)	빈도 3회인 어휘수(%)
'48년헌법	430(61.3)	118(16.8)	42(6.0)
'72년헌법	451(51.1)	162(18.4)	77(8.7)
'87년헌법	577(55.5)	168(16.2)	87(8.4)

2. 어휘의 난이도

어휘의 난이도는 대체로 ① 복합명사의 비중, ② 저빈도어휘의 비중, ③ 한자어의 비중 등의 요소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첫째, 복합명사의 대대적 활용은 법률문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19] 독일기본법의 경우 제10장(재정)은 전체 명사의 반 이상이 복합명사라고 한다.[20] 하지만 복합명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어휘의 난이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헌법전에 포함된 복합명사의 수를 일일이 계량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1단어 당 음절수'를 계산해 봄으로써, 복합명사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들이 평균적으로 길다는 것은 법률문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21] 아래 〈도표13〉〈도표14〉는 조사대상 헌법전의 평균단어길이(음절수/단어수)를 환산해 본 것이다. 북한 역대 헌법전의 평균단어길이는 1948년헌법(3.28자)과 그 이후의 헌법들(3.81~3.82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아무튼 우리 역대 헌법전의 그것(3.12~3.21자)에

19) 강범모(주 14), 260쪽에 의하면, 조사대상 법조문의 복합명사(명사+명사)는 평균 163.50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36개 장르 가운데 7위를 차지하고 있다.

20) Hilf(주 10), Rn. 46.

21) 강범모(주 14), 254쪽에 의하면, 조사대상 법조문의 단어길이 평균(음절수)은 2.24로서 전체 조사대상 36개 장르 가운데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하여 현저하게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72년헌법 이래 북한의 역대 헌법전에서 복합명사의 비중은 우리 헌법에 비하여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 〈도표9〉〈도표10〉의 고빈도어휘 분포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헌법에는 우리 헌법보다 훨씬 많은 복합명사들이 발견되고 있다.

〈도표13〉 역대 북한 헌법전의 평균단어길이(1단어 당 음절수)

'48년헌법	'72년헌법	'92년헌법	'98년헌법
3.28	3.82	3.81	3.82

〈도표14〉 역대 한국 헌법전의 평균단어길이(1단어 당 음절수)

'48년헌법	'72년헌법	'87년헌법
3.12	3.21	3.14

둘째, 저빈도어휘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곧 전체 텍스트에서 반복되지 않는 새 어휘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텍스트 자체의 난이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 개별어휘수에서 저빈도어휘(1회~3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 위 〈도표11〉〈도표12〉이다. 우리 1948년헌법을 제외할 경우, 북한 헌법전의 저빈도어휘 비중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것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 1회 어휘의 비중이 65%에 이른다는 독일기본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22] 북한의 역대 헌법전은 빈도 1회 어휘의 비중이 60%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의 어휘부하(語彙負荷)가 걸려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참고로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1979년)의 저빈도어휘 비중이 '53.07(1회)-18.38(2회)-8.32(3회)' 등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23] 우리 1987년헌법의 어휘부하는 중학교 고학년 정도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하겠다.

셋째, 일반적으로 한자어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텍스트의 난이도는 높아진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문맹퇴치의 기치 아래 1949년부터 한글전용이 강제되어 한자사용은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렀으나, 1960년대 중·후반 이후 1980년대까지 한자교육은 오히려 부활·강화되고 있다.[24] 어문정책에 있어서 한자어는 원칙상 정리의 대상으로

22) Hilf(주 10), Rn. 47.
23) 임칠성/水野俊平/北山一雄, 「한국어 계량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15-16쪽.
24) 이윤표, "북한의 한자 교육에 대하여," 북한의 어학혁명(주 5), 365쪽 이하. 그밖에 고영

간주되어 왔지만, 북한의 특수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한자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체제반영을 위한 한자어양산').[25] 우리말에서 원래 법조문 장르는 여전히 한자어의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26] 우리 1987년헌법의 기초과정에서는 한자어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0% 축소').[27] 위 〈도표9〉〈도표10〉의 빈도수 상위 100위 어휘들 가운데 순수 고유어의 수를 계산하였을 때, 북한 역대 헌법전은 18/100개(1948년헌법)→25/100개(1972년헌법)→24/100개(1992년헌법·1998년헌법)으로, 우리 역대 헌법전은 19/100개(1948년헌법)→21/100개(1972년헌법)→22/100개(1987년헌법)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모두 헌법전을 한글화하는 데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한자어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추측케 한다.[28]

헌법전에 흔히 사용되는 '또는'이란 어휘는 영어의 'or'나 일어의 'または'를 본뜻 것으로서 '(이)나'로 고쳐 쓰는 편이 자연스러우며, '및'이란 어휘 역시 한자어 '及'을 번역한 한문투이므로 '와/과'로 바꾸어 쓰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다.[29] 북한의 1972년 헌법에서 '또는'의 빈도가 현격히 감소한 것(29→7→32→27), 1992년헌법부터 '및'이란 어휘를 완전히 삭제한 것(77→51→0→0)은 바로 이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역대 헌법전에서 '또는'의 빈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40→52→68), '및'의 빈도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0→8→23).

근,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30쪽 이하도 참조할 것.

25)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언어정책」,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2, 7-8쪽, 15-16쪽. 그밖에 조오현·김용경·박동근(주 5), 68-69쪽, 151-161쪽도 참조.

26) 강범모(주 14), 256쪽에 의하면, 조사대상 법조문의 한자어 평균은 491.70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36개 장르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7) 현경대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제136회국회 제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1987. 9. 17), 12쪽: "… 한글학회 회원 기타 여러 곳에서 개정하는 마당에 우리 헌법의 조문을 가능한 한 한글로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자의 문화라고 하는, 특히 법률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을,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전부를 한글화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법제처에서 법률을 한글화하기로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오해가 없을, 이해하기 쉬운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한글을 많이 썼다고 하는 사실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현행헌법에서는 약 20% 정도가 더 많이 한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8) 이러한 헌법전의 한자어 : 고유어 비중은 일간신문 정치면에 나타난 한자어 : 고유어의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80 : 20). 임/水野/北山(주 23), 199쪽 소재 강신항의 조사결과 참조. 1981. 7. 28.자 동아일보 정치면: 한자어 81.2%, 고유어 18.8%. 같은 신문 29.자 정치면: 한자어 76.9%, 고유어 23.1%.

29) 이수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 서울: 현암사, 1999, 15쪽, 17-18쪽.

3. 표현의 강약

표현의 강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수식어의 빈도와 ② 보조동사의 빈도이다. 형용사·부사 등의 수식어가 많아질수록 표현은 화려해지고, 이것이 자제될수록 표현은 건조해진다. '(~수) 있다'나 '(~야) 한다' 같은 보조동사가 많아질수록 표현은 이완되고, 이것이 자제될수록 표현은 긴장된다. 독일기본법은 수식어와 보조동사를 모두 자제함으로써 '건조하고 긴장된' 헌법전의 전범이 되고 있다.[30] 일반적으로 북한의 언어는 선동적·전투적이면서도 건조하고 단호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확실히 보조동사의 자제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역대 헌법전은 대단히 긴장된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역대 북한 헌법전에서 '~수'의 등장빈도는 각 36회→10회→15회→20회로 나타나고 있다. 1972년헌법을 효시로 표현의 긴장도가 현저히 강화된 것이다. 다만, 1998년헌법은 그 서문에서 '위대한' '영광스러운' '튼튼한' '우월한' '확고한' '숭고한' 등등의 수식어들을 남발함으로써,[31] 법조문으로서는 대단히 화려한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역대 헌법전은 북한의 그것과 달리 '(~수) 있다'나 '(~야) 한다'와 같은 보조동사가 남발되고 있다. 가령, 역대 헌법전에서 '~수'의 등장빈도는 각 25회→70회→86회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국헌법을 제외한다면 우리 역대 헌법전은 대체로 이완된 표현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32] 아무튼 북한의 헌법전이 '화려하고 긴장된'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면, 우리 헌법전은 (수식어의 자제까지 감안할 때) '건조하고 이완된'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하겠다.

---

30) Hilf(주 10), Rn. 49, Rn. 56-57.

31) 이 점 사회주의국가인 구 동독의 헌법전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Hilf(주 10), Rn. 49. 특히 각주 83 참조.

32) 우리 건국헌법의 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문사' 유진오의 회고에 따르면 행정연구회의 헌법초안은 "문체가 몹시 딱딱"하였다고 하는데(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서울: 일조각, 1980, 34-35쪽), 기실 그 자신이 주도한 건국헌법도 그다지 "화려하거나 부드러운" 표현을 구사한 것은 아니었다. 전문의 '유구한' '위대한' '균등한' 등을 제외하면 형용사의 빈도가 두드러지지도 않으며, '~수'의 등장빈도(25회)에 비추어 이후의 헌법들보다 특히 이완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V. 맺음말

이상 남북한의 역대 헌법전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북한의 헌법전은 텍스트 편제상의 조문수, 장별 문장길이의 편차, 고빈도어휘의 분포상황 등의 측면에서, 1948년헌법과 그 이후의 헌법들이 매우 상이한 언어구조를 지니고 있다. 둘째, 북한의 헌법전을 우리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문장길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핵심어의 전면(前面) 배치 내지 부정구문·수동구문·명사구문·상호참조(=준용규정)의 자제라는 측면에서, 전자는 법조문으로서의 형식성·전문성보다 내용상의 용이성·일반대중성을 중시하는 언어구조를 지니고 있다. 셋째, 복합명사의 비중(평균단어길이로써 추정함)과 저빈도어휘의 비중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북한 헌법전이 우리의 그것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언어구조를 지니고 있다. 넷째, 수식어의 빈도와 보조동사의 빈도, 두 측면에서 북한 헌법전은 우리의 그것에 비하여 화려하고 긴장된 표현을 선호하는 언어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는 남북한 '헌법전'의 언어구조만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비교한 것이어서, 동일 법체계 내의 여타 법부문과 구별되는, 헌법의 고유한 언어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는 분석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향후 민법·형법·소송법 등 여타 법부문의 언어구조 변화추이를 함께 분석하여, 이를 헌법의 그것과 '종횡'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체 텍스트의 유기적·체계적 분석이 불가능한 '법조문'의 분절적·독립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인 텍스트 자체도 순수한 법조문에서 나아가 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기왕의 헌법전에 대하여 그 언어구조와 그 변화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제헌·개헌에 대비한다는 — 특히 남북한 통일헌법의 제정에 대비한다는 — 극히 현실적인 헌법정책적 필요에도 부응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한다.